

# 최근 STCW 협약 개정 사항 및 아국 적용에 대한 고찰

채종주\* · 강석용\*\*\*

\*, \*\*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

## An Study of recent amendments of STCW Conventions and its application to Republic of Korea

Chae chong-ju\* · Kang suk-young\*\*\*

\*, \*\*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

**핵심용어** : STCW 협약, STCW 개정, 여객선 훈련 요건, 극지항해선박 훈련요건, 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훈련요건, ECDIS 교육요건

**Key Words** : STCW Convention, STCW amendments, Training for Passenger ships, Training for Polar waters ships, Training for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, ECDIS type specific training

### 1. 배경

#### STCW 2010협약의 개정

- 2010년 STCW Manila Amendments는 2012년 1월 1일 부로 발효 되었고, 2016년 12월 31일로 그 유예기간(Transitional Period)가 종료되어 STCW Manila amendment는 현재 강제 적용중임
- STCW Manila Amendments의 강제 적용 시점이 지난 이후 해석상의 문제로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.
- 더불어 2010년 STCW Manila Amendments 이후 협약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.
- 특히 극지항해사의 훈련 요건, 여객선 승무원 훈련 요건,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훈련요건 등이 개정 및 채택되었으며 시차를 두고 강제 시행 예정임.
- 이에 STCW Manila Amendments의 강제 적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와 새롭게 채택된 STCW 협약 개정 사항의 국내 적용에 있어 고려 및 준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.

### 2. STCW 2010 개정 적용 및 최근 개정 사항

#### 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장, 항해사, 부원 및 기타 사람에 대한 훈련 요건(국제)

- 여객선의 훈련요건 개정을 위해 미국, CLIA와 ICS Interferry가 각각 협약 개정 초안 제출
- HTW 제2차 회의('15)에서는 규정 V/2에 의한 훈련을 3단계로 정하였으나 현재 협약에 있는 교육훈련의 요건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을 4단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작업반의 의견에 따른 교육을 4단계로 함.
- 4단계 교육/훈련 제안은 다음과 같음
  -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 훈련
  - 여객선 군중관리 훈련
  - 여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 및
  - 여객선 비상 진속화 교육
- 개정된 규정은 2018년 6월 30일전까지 1/3의 회원국 또는 전 세계 상선 GT의 50%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2018년 7월 1일 발효 될 예정

### 2. STCW 2010 개정 적용 및 최근 개정 사항

#### 극지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및 항해사의 훈련 요건

- Polar Code의 개발에 따라 극지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을 개발하여 STCW 협약 제5장에 추가하도록 함
- 이에 따라 HTW 제1차 회의('14)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해기사 및 선원에 대한 훈련요건을 아르헨티나와 노르웨이의 제안으로 논의 시작함.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.
  - Advanced(항상)교육은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항해사에게 적용되고, 요건은 본선 선원 이외의 ice advisor 등과 같은 외부특수요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
  - 선장과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에 대한 기초교육 및 항상교육 요건은 STCW 협약 제5장 규정 및 Code A에 2단계 구조로 함.
  - 부원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, 본선선원 이외의 전문가요원의 승선여부는 Polar Code Part B에 규정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음

### 결론

- 극지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및 항해사에 대한 교육 훈련요건의 발효에 맞추어(2008년 7월 1일 예정) 관련 교육 개발 및 선박직업법 개정 필요
- 저 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법 개정 필요
- 여객선에 승선하는 해기사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 개정 및 관련법 개정 필요
- 해기사면허 보유요건, 협약상 서류적 증거에 대한 정의, 전자해도 제조사 교육에 대한 적용사항 숙지 필요
- 아국의 선박직업법 관련 STCW 협약의 취지와 적용시점에 대한 연구 및 개선 필요.

\* First Author : kateshe76@naver.com

† Corresponding Author :sykang53@seaman.or.kr